「2019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」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·지원하고 있습니다. 2019년도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.

> 2019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

1 목적

○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'과학 기술유공자'로 지정하여 예우·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,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

② 규모:00명

*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

③ 자격요건

- 이학·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
 - ※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
- 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9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

<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~제4호>

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가. 「형법」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64조의 죄,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·제338조 전단·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0조,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
- 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다.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- 라.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죄
- 마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바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7조, 제8조,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 17조제1항의 죄
- 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
- 4.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 및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,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4 지정기준

○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

<과학기술유공자법>

제7조(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.

- 1.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・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
- 2.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
- 3.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
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

<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>

제5조(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
- 2.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
- 3.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
- 4.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
- 5.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
- 6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

5 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

- (1단계) 신청·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
- (2단계)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'전문위원회'에서 전문심사
- (3단계) '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'에서 최종후보자 선정

6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

- (결격사유 조회) 범죄경력조회
- 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
- (업적·성과 검증)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
- ※ 한국연구자정보(Korean Researcher Information, KRI), 국가R&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
- (공개검증) 최종 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학회 의견 수렴

7 행정사항

- (제출기한)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
 - * 단, 오는 6월 28일(금) 접수분까지 2019년도 지정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0년 지정 대상으로 심사
- (신청·추천권자) 본인(유족)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*의 장
 - *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,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

<과학기술유공자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과학기술인"이란 이학·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(이하 "과학기술 분야"라 한다)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<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>

제2조(과학기술인의 범위 등) ①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- 1.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·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(이하 "과학기술 분야"라 한다)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.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 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○ 제출방법

- 온라인 접수(www.koreascientists.kr)
-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
- 제출서류(소정양식)

구 분	제출서류
본인 (유족)	1.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1부 2. 공적조서 요약서 1부 *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, 경력(재직)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,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(3.5cm×4.5cm) 1장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, 서약서 1부,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1부 등은 지 정심사 진행시 별도의 요청에 따라 추후 제출
기관(단체)장	1~2. 상동 3.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 1부 *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은 추후 제출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ㅇ 접수처

접수기관	주소	문의전화
한국과학기술한림원 (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)	(13630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	주용규 팀장 031-710-4657

0 문의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장태은 사무관(02-2110-2785)
-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공자사업팀 주용규 팀장(031-710-4657)

8 기타

- 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, 관련 서식, 참고자료 등은 아래 사이트 참조
 -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(www.koreascientists.kr, 과학기술유공자 신청-서식 자료실)

붙임: 2018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16인 명단

국내 최초 간 대량 절제수술에

성공하고 효과적 수술방법 개발

· 한국형 원자로 설계와 핵연료

국산화로 원자력 기술자립 실현

2018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16인(성명 가나다순)



· 선천성 소아심장질환 치료 등

소아 건강 증진에 큰 기여

B형 간염백신 등의약품

개발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